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범



여수시 조례 제2209호

붙임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어기본법」 제13조”를 “「국어기본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등”이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을 “(공문서등의 우리말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문서 등”을 각각 “공문서등”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8조로 하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공공기관등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등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

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행사명을 정한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여 외국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 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5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어문규범”이란 「<u>국어기본법</u>」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p> <p>4. “<u>공문서등</u>”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u>공공기관등</u>’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국어기본법</u>」 제13조----- ----- ----- ----- -----.</p> <p>4. “<u>공공기관등</u>”이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p> <p>5. “<u>공문서등</u>”이란 공공기관등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p>

5. 6. (생략)

제4조(공문서 등의 우리말 사용)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 등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낱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1. ~ 4. (생략)

② 공공기관등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6.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4조(공문서등의 우리말 사용) ①

----- 공문서등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공문서등 -----

-----.

제5조(공공기관등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등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행사명을 정한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여 외국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제4조와 제5

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

제5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생략)

② 우리말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신설>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등) 시장은

제6조 ~ 제11조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
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17조(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